

제 1기('03 ~ '05.1) : 준비기

[행정생산성 향상]

1. 특허심판원의 변화와 혁신
2.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도입
3. 특허망 · 행정망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4. 세계가 주목하는 PCT 전자출원시스템

제 1 기('03 ~ '05.1) : 준비기

[행정생산성 향상]

1. 특허심판원의 변화와 혁신

- 현실을 보다
- 혁신의 시작-리더의 심사숙고(리더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
- 본격적인 혁신의 추진 - 제1단계 혁신조치
- 새로운 저항의 등장과 극복 - 제2단계 혁신 조치
- 기대효과와 성공요인



현실을 보디 (특허심판원의 위기 - “혁신의 목표”)

가. 외부의 평가 : 특허심판원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나?

- 특허심판처리기간이 너무 길다(설문조사, 2003. 5).
- 특허심판의 장기화 - “망한 뒤에 승소 무슨 소용”
(매일경제, 2004. 6. 23.)



〈 매일경제 〉

- 특허심판 청구부터 결정까지 2년 걸려... 미국의 2배
- “특허 받으면 뭐합니까. 분쟁에 휩싸일 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지.”
- 기업들이 한국 특허행정의 문제점으로 꼽는 1순위는 ‘특허심판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 ‘함흥차사’ 특허심판(문화일보, 2004. 6. 28.)

〈 문화일보 〉

- 특허심판처리기간 점차 늘어... 산업계 여기저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특허분쟁에 대한 심판처리가 지연되면 기업들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 파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 내부의 인식 : 기업의 파산은 남의 일? ⇒ 주인 없는 조직?

- ‘심판처리를 빨리 해 달라’
→ 무슨 소리지..... 정말로 심판처리 기간이 늦어진다고 기업이 망해!
그 기업, 부실기업 아니야?
- 우리도 열심히 심판처리를 하고 있는데, 늘어난 일의 양(심판청구)에 비해 일할 사람이 늘지 않는다.



〈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나태함과 구조적인 비효율 〉

- 특허심판은 공부할 필요 없이 ‘상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경험이 많은 심판장).
- 좋은 게 좋은 것이다(허허실실 조직 분위기).
- 특허심판원의 ‘심(審)’자는 심심할 ‘심’자다(지금도 심심한 퇴직 심판장).
-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리는 인사상 불가피하게 거쳐 가는 자리이며 잠시 쉬는 자리이다(낙하산 타고 온 심판장).

다. 도대체 실제로 어떤 상황이길래? - 객관적인 자료로 통해 본 문제 인식

■ 일반현황

○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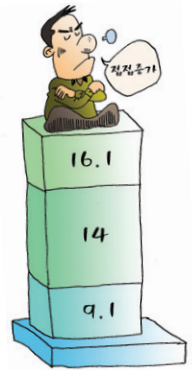
- 1977. 3 : 특허청 설립(심판소·항고심판소 설치)
- 1998. 3 : 심판소·항고심판소 통합 → 특허심판원 설치

○ 임무

-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 결정계 심결불복사건에 대한 소송업무 수행
-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조사·연구
 - ※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 수행

○ 조직 구성

- 원장·13개의 심판부(3인 합의체) 및 심판행정실로 구성
- 각 심판부에 심판장(국장급) 1명, 심판관(과장급) 2명 배치
 - ※ '98년 설립된 특허법원은 법원장·3개 재판부(3인 합의체)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재판부에 재판장 1명, 판사 2명 배치



■ 심판업무 관련 현황

○ 심판처리기간

- 2004. 5. 기준 특허·실용신안 16.1월, 상표·의장 6.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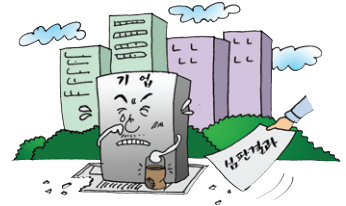
〈 심판처리기간 현황 〉

(단위 : 월)

기준	2001	2002	2003	2004.5
특허·실용신안	9.6	11.1	14.0	16.1
상표·의장	5.3	5.7	5.6	6.6

○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2004. 1~5 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심판청구 : 특허·실용신안 9.4%, 상표·의장 3.3(17.6)%
 - 심판처리 : 특허·실용신안 51.0%, 상표·의장 1.3(Δ2.6)%



〈 상황진단 〉

- 특허·실용심판과 상표·의장심판의 처리기간의 차이가 큼.
- 특허·실용신안 심판의 청구 증가가 9%를 넘고 있고, 특허·실용 심판처리기간이 2001. 12월 9.1개월 → 2003. 12월 14개월 → 2004. 5월 현재 16.1개월로 지속 증가

〈 신임 심판원장의 인식 〉

-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술의 수명주기는 점차 짧아지는데, 심판은 점점 길어진다.
 -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 기술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기업은 망한다.
- 조직 내부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변화에 무감각하다.

혁신의 시작 - 리더의 심시숙고(리디는 짐을 지시는 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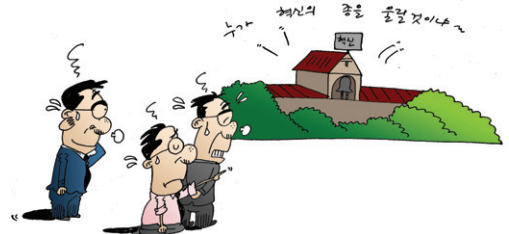
“혁신의 시작은 문제만 제기하고 비리를 파헤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혁신의 목표가 무엇인가?
 -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한 마리의 토끼이고, 정확한 심판의 실현도 놓칠 수 없는 다른 한 마리 토끼이다.
 -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 심판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전념하도록,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늘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되, 또 다른 목표(정확한 심판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그러면 누가 혁신할 것인가? 누구를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가. 누가 혁신의 종을 울릴 것인가?

■ 시작의 어려움 : 혁신 주도세력 형성의 한계

- 핵심인력인 심판장(국장급) 및 심판관(과장급)의 기능에 의한 한계
 - 심판관의 경우는 자신에게 배당된 심판사건의 처리에 바빠 심판원의 운영 및 심판제도를 혁신하는데 대하여는 소극적
 - 심판장의 경우는 심판원의 운영에 대해 권한과 책임이 없는 관계로 적극적이지 못함.
- 심판원장이 혁신의 주도세력에 인사·금전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의 결여



■ 하향식 혁신전략의 추진 : 특허심판원장이 주인으로 나서다.

- 혁신의 아이디어 제공과 채택
 - 기관장(심판원장)이 심판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얻다.
 - ※ 심판장·심판관은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의 내실화와 신속한 심판처리에 매진하도록 하되,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 계선조직(심판행정실)을 통한 혁신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획과 집행
- 혁신 체계의 구축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관장의 혁신의지 표명

〈 심판원장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혁신의지 표명 〉

- 조직의 위기는 내부로부터 온다.(2004. 4. 취임사)
- 일하는 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개선한다.(2004. 5. 심판장회의)
-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구별되고 일하는 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2004. 7. 심판장회의)
- 일하지 않고 안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를 일소한다.(2004. 8. 심판장회의)



나. 무엇이 위기의 원인인가? ⇒ 그것이 혁신의 대상이다.

: 자체 조직진단 ⇒ '수혈'을 필요로 하는 대(大)수술이 필요하다.

■ 일하지 않는 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 심판업무수행과 심판처리실적의 괴리현상이 27년간 상존해 오다.



- '77년 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관(국장급) 9명, 보좌관(5~6급) 9명을 배치(심판소에는 심판관(과장급) 10명 배치)
 - 보좌관은 개인별 심판처리목표 없이 항고심판관의 심판업무수행을 보좌
 - 일부 항고심판관의 경우, 심결서 작성 등 심판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좌관으로 하여금 준비토록 한 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사례 발생
- '98년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에도 일부 심판장(국장급)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 지속
 - 심결서 작성 등을 보좌관으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더라도 심판장의 심판처리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와 심판처리실적으로 평가받는 자 사이의 괴리현상 발생
- 지난 수년간 심판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심판장이 심판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처리에 직접적인 기여가 미미한 실정

〈 A 심판장보좌관 〉

- 심판장보좌관을 인간답게 대우하여 달라.
 - 일은 전부다 하면서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
 - 심결서 초안을 대신 작성하는 기제에 불과하다.
 - ⇒ 단순한 보좌관으로서 실체 없는 그림자로서만 일해 왔다.
- 이제는 심판원이 다시 태어나야 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은 과감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 상식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심판업무수행을 위한 학습시스템 미비)

- 국제특허연수부의 심판관 양성과정(2주) 외에 특허심판원 자체의 심판관 직무교육 시스템 미비
- 심판관(장)의 월별 자료조사보고서는 심판관의 전문성 제고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형식적이며 의례적으로 작성



〈 초임 심판관 〉

- '심판관과정'에서 배우긴 했는데... 4년이나 지나서...
- 누구에게 배워야 하나?
- 심판시스템의 사용방법도 다 잊어버려...

〈 경험으로 먹고 사는 심판장 〉

-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으로, 그냥 판례에 따라서... 심판하면 되지. ⇒ 심판은 그런 거야?
- 교육 받을 만큼 받았잖아...

본격적인 혁신의 추진 - 제1단계 혁신조치(2004. 5.)

■ 자신의 직분을 게을리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정비하다.

⇒ 심판장 보좌관제를 폐지하고 심판연구관제 도입

- 심판장 보좌관제를 폐지하고 법원의 재판연구관의 예에 따라 심판연구관제 도입
- 종전에는 보좌관에게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심판연구관에게는 개인별 심판처리목표(월 22접)를 부여하고 심판장의 지도하에 심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B 심판연구관 〉

- 명실상부한 특허심판원의 일원이 된 기분이다.
- 여전히 특허법상 그 역할에 일정한 한계는 있으나, 상당부분 의견이 존중되는 분위기다.



■ 심판처리능력 제고

- 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 조정, 심판연구관에게 개인별 심판처리목표 부여 등을 통하여 월 심판처리능력 40% 제고(월 1,014 → 1,418접)

■ 분야별 심판인력의 조정

- 심판처리기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상표·의장분야 심판장 1명 감원
→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장 1명 증원
⇒ 상표·의장분야 심판부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의 구성비
= 7 : 6 → 6 : 7

〈 심판부 조정에 대한 반발 〉

- 심판부 조정은 조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 그 동안 무리 없이 잘 해 왔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심판장을 증원하여 늘리면 되지 왜 내부 조정을 하는가?
 - 상표·의장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도 생각해야 한다.

〈 강력한 추진 〉

- 특허·실용신안분야의 심판장을 내부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특허심판의 당사자인 고객 즉 기업이 쓰러지는데 자신의 이익만 찾을 수는 없다. 이처럼 고객(기업)이 쓰러지면 결국은 특허심판원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 만약, 자신이 기업주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 심판업무수행을 위한 학습시스템 구축(심판관의 전문성 제고)

- 특허심판원 주관의 심판관 직무교육과정 개설·운영
 - 신규 심판관(장)을 대상으로 심판제도 및 심·판결례 등을 교육하는 「심판관실무교육과정」(2주) 운영
 - 신규 심판관(장) 중 심판경험이 없으면서 심사경력이 6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이론과 심판사례를 조사·연구하는 「심판관지정교육과정」(3개월) 운영
 - 심판관(장) 근무 중에는 심결취소율을 낮추기 위하여 패소사례를 연구·분석하는 「심판관 보수교육과정」(분기별 2~3일) 운영
- 심판 능력 향상을 위하여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교육 실시(2004. 6 ~ 12.)
- 월별 판례조사·연구보고 실시
 - 심·판결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심판에 대한 전문지식 축적 도모

〈 K 심판장 〉

- 전입 후 바로 적응할 수 있고 심판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 특히,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교육은 지금까지 경험한 교육 중 가장 알차고 좋은 교육과정이다.
 - 민사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심판절차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므로 심판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새로운 지향의 등장과 극복 - 제2단계 혁신조치(2004. 9.)

가. 1단계 혁신조치에 대한 비웃음과 저항

- 길어야 1년이지.....누가 더 오래 근무하는지 보자.
- 실무자에게 누구와 더 오래 근무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
- 일부 심판장의 반발
 - 국장급이나 되서 심결문을 직접 작성해야 하다니.....



나. 제1단계 혁신조치에 대한 자체 평가 : 일부 과거 폐습 잔존

- 심판연구관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2004. 8.)
- 2004. 5. 각 심판부에 심판연구관 2~3명을 배치(총 31명)하여 약 4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일부 심판연구관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발생
- 심판연구관제를 도입하면서 심판장에게 심결서 작성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개인별 심판

처리목표(월 6점)를 부여하였으나, 과거 보좌관제의 경우와 같이 일부 심판장이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결서 작성 등을 준비토록 한 후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사례 발생

다. 제2단계 혁신조치를 위한 설득과 극복 전략

- 심판업무 혁신사항에 대한 심판장 회의 개최(2004. 8~9.)
 - 심판관련 훈령·예규의 제·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
 - 객관적인 통계자료 제공
- 심판업무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강도 높은 혁신 추진
 - 심판장, 심판관 및 심판연구관 등에 개인별 심판처리목표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한 심판관 평가체계 개선
 - 일하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운영시스템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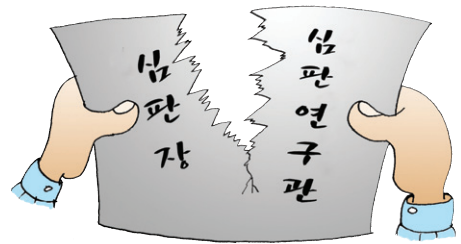
〈 극복의 전략적 노력 〉

- 토론의 방식
 - : 쟁점에 대한 난상토론(실질적인 노타이 토크쇼)
 - 합리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 기관장(심판원장)의 주도하에 토론을 한 후 바로 동의를 이끌어내고 결론을 내려 즉시 실천에 옮긴다.

라. 제2단계 혁신조치 (2004. 9.)

■ 심판장·심판연구관의 분리와 내실 있는 심판연구관 지도체제 확립

- 일부 심판장이 심판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심판연구관에게 맡기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장과 심판연구관 분리
 - '77년 항고심판소 설치 후 27년간 지속되어 온 심판장에게 보좌관(심판연구관)을 배치하는 제도 폐지
- 심판연구관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를 위해 「심판연구관 지도체제」 확립
 - 심판경험이 풍부하고 지도 능력이 있는 심판장 4~5명이 심판연구관을 전담 지도 (심판장 1명이 심판연구관 6~7명 지도)
 - 심판연구관을 지도하는 심판장에게는 내실 있는 지도를 위해 개인별 목표를 하향 조정 (월 6 → 3점).



〈 심판연구관 지도체제에 대한 이견과 설득 〉

- 심판장, 심판연구관 분리에 동의한다.(“o” 심판장)
 - 내가 불편한 점은 있으나, 국민을 위해서나 특허심판원을 위해서나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이, 대법원에는 특허조사관이 있어서 소송서류 전반에 관한 검토와 함께 기계·화학·생명공학·전기·전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관 재판연구관의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 특정 심판장이 전담하여 심판 보조인력인 심판연구관 지도체제를 확립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서 모든 심판장·심판관 밑에 1~2인을 둘 수 있어야 한다.

⇒ 설득

- 반대하는 견해도 그 타당성은 있으나, 이를 위한 전제요건으로 심판장의 심판수행능력이 특허법원의 재판장 및 대법원의 대법관 정도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심판경험이 없는 심판장이 보임되는 경우 심판연구관에 대한 지도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심판연구관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장이 안주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 심판연구관을 지도하는 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문제와 해결 〉

- 당초계획 : 개인별 심판처리목표 미부여(심판연구관만 지도)
- 심판연구관을 지도하는 심판장의 경우도 심결서를 직접 작성해 보아야 지도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지도의 내실화가 가능하다. (혁신적인 심판장들)

⇒ 당초계획의 변경

- 심판연구관을 전담지도하는 심판장의 경우 종전보다는 목표를 하향조정하되, 일정 심판처리목표 부여(월6점 → 3점)

- 심판처리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시스템 도입
 - 심판업무수행능력 또는 심판처리실적이 미흡한 심판장(관)에 대하여는 심판합의체 사건배당을 제외하고 심판부 근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심판처리능력 제고

- 심판장·심판연구관의 심판처리목표 조정 등을 통하여 월 심판처리능력 4% 제고
(월 1,418 → 1,472점)

※ 심판처리목표 조정

- 심판연구관을 지도하지 않는 심판장에 대하여는 개인별 심판처리목표를 상향 조정
(월 6 → 9점)
- * 2005년 1월에는 12점, 7월에는 15점으로 상향 조정
- 심판연구관을 심판부에서 분리함에 따라 각 심판부의 심판연구관 중 1인의 심판처리목표를 상향 조정(월 20 → 22점)

〈 심판연구관을 지도하지 않는 심판장의 심판처리목표의 문제와 해결 〉

- 심판연구관을 지도하지 않는 심판장의 경우 월 심판처리목표가 다소 적으므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심판연구관을 지도하지 않는 젊은 심판장).
- 진정한 혁신을 희망하는 심판관들의 이유 있는 주장
 - 심판장은 심판실적이 적어 적게 일하고, 심판관은 제일 많이 심판실적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왜 심판장이 월급도 많이 타는데 심판사건을 적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 법관은 판사·부장판사·대법관으로 올라 갈수록 업무량이 많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와 다르다

⇒ 계획에 반영

- 심판장들의 월 심판처리 목표를 심판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2005. 7. 1.까지 단계별로 상향 조정
[중전 6점 → 1단계(현행) 9점 → 2단계 12점
(2005. 1. 1.) → 3단계 15점(2005. 7. 1.)]



■ 분야별 심판인력 조정 계획 수립

- 추가적으로 분야별 심판인력 조정(2004. 12.)
 - 상표·의장분야 심판장 1인, 심판관 1인 감원 → 특허·실용신안분야 심판장 1인, 심판관 1인 증원
 - ⇒ 상표·의장분야 심판부와 특허·실용신안 분야 심판부의 구성비
= 6 : 7 → 5 : 8

■ 기타 조치

- 심판연구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98년 설치된 독방 형태의 심판관실(28개실)을 6년 만에 해체기로 결정(2004. 10. 사무실 재배치 공사 완료)

〈 독방의 파괴와 반발 〉

- 심사관실 벽을 부서뜨리는 것은 조용한 환경 속에서 심판사건을 심리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심판원이 대전청사로 온 후 6년 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

〈 그래도 개선...그리고 만족 〉

- 설득 그리고 개선
 - 1인 독방형태의 패쇄적인 공간은 나태함을 가져 올 수 있고 적절한 관리시스템이 확보 되지 않는다.
 - 사무실은 몇 사람을 위한 근무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심판연구관들에게도 통풍, 채광 등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독방 형태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심판사건의 심리에 방해되지 않는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다.
- 개선후의 만족
 - 막상 개선하고 보니 밝아서 좋다.
 - 공간도 다소 오히려 넓어진 느낌이다.
 - 심판관·심판연구관이 같은 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유사한 논점에 대하여 같이 연구 토의 할 수 있음으로 이번 심판관실의 벽을 허물고 재조정한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심판에서도 synergy효과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더 많은 능력을 기대해 본다.

기대효과와 성공요인

가. 기대효과

■ 심판처리기간의 단축

-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기간
은 2004. 5월 16.1개월에 달했으나, 「특허심판의 신속처리대책」등 특허심판원 혁신이 추진됨에 따라 2004. 9월에는 13.4개월로 단축됨.
- 2004. 4/4분기에는 동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2004. 12.에는 1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 상표·의장 심판처리기간은 2004. 8월 7.1개월에 달했으나,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4. 9월 6.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 12월에는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 학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특허심판원

○ 체계적인 심판관 직무교육·판례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열심히 학습하는 조직분위기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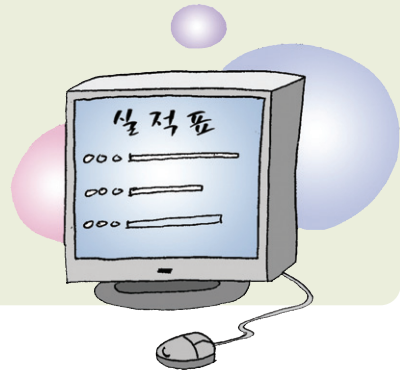
신속·정확한 특허심판 실현

• 신속·정확한 특허심판 실현

※ 심판처리기간 목표

- 특허·실용신안 : $\frac{2004}{12}$ $\frac{2005}{10}$ $\frac{2006}{6\text{월}}$
 - 상표·의장 : 2004년 이후 6월

• 심판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신속한 심판 실현



실질적인 1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나. 성공요인

■ 리더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강력한 실천 의지



○ 심판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심판청구인 등 고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특허심판원의 비전과 역할 정립

○ 조직 구성원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천의지에 의한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및 끈질긴 설득

■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 혁신 추진사업의 평가를 위해 다양한 채널 이용
 - 심판장·심판관·심판연구관 등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실태 파악 및 혁신에 대한 평가 실시

○ 변화가 큰 혁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사항에 대하여 심판장 등과 격직없는 토론을 실시하여 혁신에 대한 인식 확산

○ 월별 심판실적평가회의 등을 통한 심판업무 혁신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 혁신의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법제화하고 이를 심판관 평가와 연계

○ 혁신사항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하여 심판관 등 조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로 내재화시킴
 - 2004. 5~ 9. 간 특허심판 관련 훈령·예규 9개 제정, 6개 개정

○ 혁신사항을 준수하도록 혁신의 내용을 심판관 평가에 반영

제 1 기('03 ~ '05.1) : 준비기

[행정생산성 향상]

2.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도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는 전세계 특허청 중 최초

-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심사관 2부제 도입?
- 뭐 뵈족한 방안이 없을까?
- 그래, 이제 시작이다.
- 어, 시작이 반이 아니잖아! – 곳곳에 도사린 복병
-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지.
- 드디어, 정상궤도에 오르다!
- 이제 남은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뿐
- 도랑치고 가재잡고!
 - 공간부족 해소하고, 예산도 절감, 더불어 생산성 향상까지
-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 쇠도하는 벤치마킹



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심사관 2부제 도입?

■ 좁아서 못살겠다!

-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심사관을 증원함에 따라 사무공간 과밀화 및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 심사관 1 : 내 청춘을 독서실에서 보내며 힘들게 고시에 합격해서 특허청에 왔는데, 콩나물시루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다니!
- 심사관 2 : 야 그래도 우리국은 양반이야, 전기전자심사국은 1개과가 5층 열람실로 이사해야 한데!
- 심사관 3 : 이러다가 심사관 2부제 도입되는 것 아냐!

■ 당장 급한데, 사무공간 추가확보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 대전청사 내에서 추가 사무공간 확보는 여유공간의 부족으로 요원한 이야기이고,
- 그렇다고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하자니 비용도 만만찮을 뿐만 아니라, 언제쯤 가능할지도 기약할 수 없다.



뭐 뽀족한 방인이 없을끼?

■ 재택근무 시행일정을 앞당기자.

- “청내 사정이 이러하네, 정해진 구축일정만 운운하며 뒷집지고 있을 수는 없다.” “재택심사제도 도입일정을 1년 앞당기자!” (L국장, '04년 1월 초)
 - ※ 재택근무는 당초 '06년부터 실시가 가능하도록 '05년까지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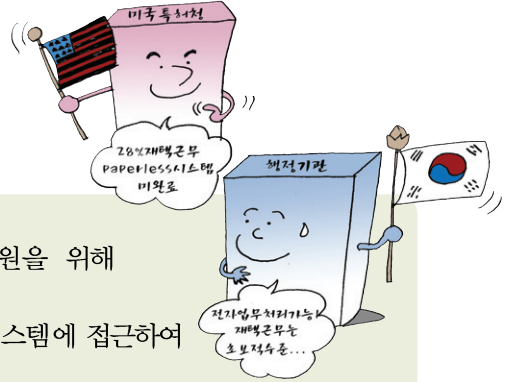
■ 타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미국 특허청

- 상표분야 : 현재, 심사관 390명 중 110명(28%)이 재택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1주일에 4일간 재택근무
 - “Hoteling”이라 불리는 사무공간 공유제도 시범운영 중

- 특허분야 : 현재, 전체 심사관의 20%에 해당하는 665명의 선임심사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이들은 1주일에 1일씩 재택근무
- ※ 미국 특허청은 Paperless 사무처리시스템 구축이 미완료된 상태이므로, 심사관련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서 심사업무 수행

- ※ 호주 특허청도 70여명의 심사관이 재택근무하고 있으나, 역시 원격지에서 청내 출원서에 접근하는 것은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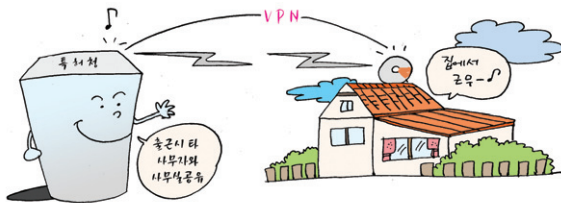


국내 행정기관

- 행정자치부는 각 행정기관의 재택근무제도 도입지원을 위해 원격근무 전산망 지원센터 구축완료('03년 3월)
 - 출장 중 또는 퇴근한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내부시스템에 접근하여 전자결재 등 전자적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구현
- '03년 6월부터 기획예산처·산업자원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내부정보 열람 등의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

■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 전자정부법 제30조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
 - ※ 전자정부법 제30조 :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 C팀장, 사무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하여 재택근무 도입일정을 1년 앞당기겠다고 청장님께 보고하다. (간부회의, '04년 2월 10일)

- 분리된 내·외부망의 통합, 내부분서에 대한 완벽한 접근통제장치가 완비되는 '05년 말에야 완벽한 형태의 재택근무 도입이 가능하지만,
- '04년 중 망통합이 완료되므로, 특허넷Ⅱ 구축일정을 일부 조정한다면 제한적 시범 사업은 '05년 초부터 가능
- '05년부터 재택근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 하여 '06년부터 본격실시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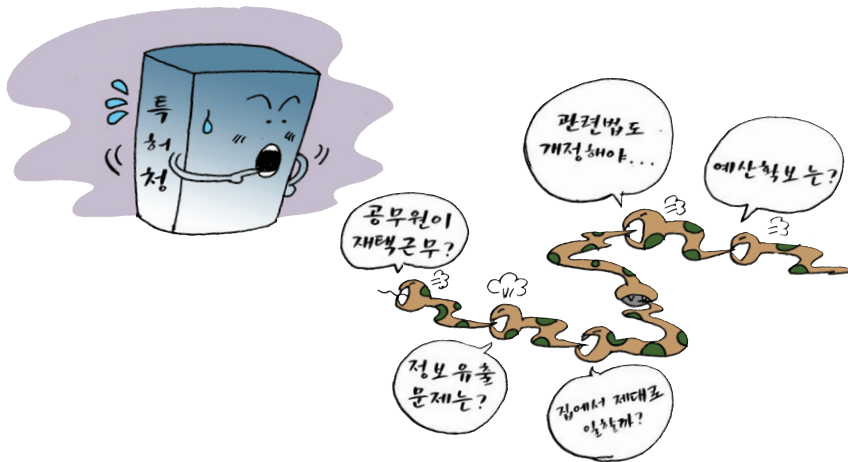
특허넷 재택근무 추진방향

-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 재택근무지에서 특허넷에 접속하여 심사심판업무 수행하고
-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특허넷과 재택근무자를 연결

- 재택근무자는 청 출근시 타 근무자와 사무공간 공유

※ VPN (Virtual Private Network) :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되 암호화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보안성이 높은 전용선을 사용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기술

이, 시작이 반이 아니잖아! - 곳곳에 도사린 복병



■ 온갖 부정적인 인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다.

- 우리나라 실정에 공무원이 무슨 재택근무냐?
- 심사관들이 과연 집에서 정말 제대로 심사할 있을까?
- 아마 관리자의 반대로 시행하기 힘들걸
- 심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누가 책임질 거야?
- 복무관리와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 행하더라도 지원자가 없을걸.

■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서는 아마 특허법 등의 법률도 개정해야 될 텐데.

- 특허법 등에서 규정한 “서류 반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제기 되었고,

- 만약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현실적으로 '05년 초에 시범사업 개시는 불가능

※ 특허법 제217조 제1항 : 특허출원·심사·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 일정을 1년 앞당기니, 소요예산 확보도 문제가 되네!

- 시범사업을 위해 가상사설망(VPN)이 '04년도에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미 '04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 공유사무공간용 PC 및 모니터, 인터넷 회선사용료는 우물쭈물하다가 기간을 놓쳐 '05년도 예산안에서 누락

세미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지 - 각개 전투로!

■ 청내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

- 직원들의 제도도입에 대한 인식이나 호응도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조심스럽고
- 재택근무제도는 도입된다는데, 기본적인 추진방안(도입시기, 실시방법, 선발기준 등)을 알려주지 않으니, 각종 소문만 청내에 무성하네.
- 그래, 직원들 스스로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하자!
- 방법은 설문조사('04년 5월 24~29일)
- 설문지 설계, 자료취합 및 분석 등으로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대만족!

설문조사 결과

- 재택심사제도 도입에 대한 청내 직원들의 공감대 확인
- 설문 응답자의 82.3%가 재택심사 도입 찬성(662명중 545명)
- '05년 시범실시를 위한 참여인력은 충분하게 확보
- 시범실시 참여 희망자 157명중 62명이 3년 이상 경력심사관
- 시범실시 완료 후 본격실시에도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시범실시 및 본격실시 참여희망자는 235명(36%)이며, 추후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473명(71%)
- 사무공간 공유제도의 성공적 도입가능성 확인
- 응답자의 23%(155명)가 개인사무공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반대자는 17%(110명)
- 재택심사제도 도입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기여 예상
- 응답자의 51%(339명)는 심사물량 추가배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물량 추가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8%(121명)
- 추가물량의 범위로는 5~10%를 가장 선호



■ 둘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자!

- 공개된 출원을 대상으로, 외부 반출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없이 재택심사제도 도입 가능
 - 법개정 이전에는, 출원공개 전 자료 등 비밀자료에 대하여 재택근무지로부터의 접근을 금지
- 그러나, 심사처리기간 단축(18개월 이내)에 대비하여 공개 전 자료에 대한 재택심사가 가능하도록 동 조항에 대한 개정 추진
 - 이번 기회에 전자화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조항들도 발굴하여 개정안에 포함 (특허법 28조의 3등)

검토 경과

- 제1차 검토회의('04. 7. 1)
 - 참석자 : 기준과, 조정과, 행정법무 등의 담당사무관 9명
 - 회의결과 : 법개정 없이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방향 확인
- 제2차 검토회의('04. 7. 8)
 - 참석자 : 정보기획관 등 7명
 - 회의결과 : 1차 검토회의 결과 확인 및 후속절차 논의
- 유권해석 관련 법제처 의견 문의('04. 7. 23)
 - 검토자 : 법제처 특허청 담당법제관
 - 검토내용 : 공개된 출원을 대상으로 법개정 없이 재택심사 가능



■ 발상을 전환하면, 길이 보인다.

- VPN 도입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구축·운영 중인 GVPN(Government VPN)을 사용하기로 협의하여 간단히 해결
 - 특허청은 공짜로 VPN을 사용해서 OK!
 -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이용률이 낮아 고심하던 GVPN 활용도 높아져 OK!
- PC 구입비용, 회선사용료는 일단 '05년도 해당 예산과목에서 지출하고, 부족시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기로 기획예산과와 합의

■ 드디어, 정상궤도에 오르다! – 기본계획 수립 보고('04. 10. 14)

- '05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한 후 '06년부터 본격실시
 - 심사업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업무 확대
 - 최초 60명으로 시작하며, 최적의 실시유형 설계를 위해 4가지 유형으로 실시

비교항목 \ 실시유형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재택근무일수	4일	3일	2일	1일
사무공간 공유제도	O	O	O	X
장비지급	O	O	O	X



- 시범사업은 서류반출 금지규정(특허법 제217조 등)을 감안하여 공개된 출원에 대해서만 실시, 본격실시에 대비하여 관련조항 개정 추진
- 재택근무자는 근무시간 중에 재택근무지에서 특허넷에 접속하여 심사·심판업무 수행
 - 암호화된 가상사설망을 통하여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연결
- 재택근무자는 청 출근시 타 근무자와 사무공간 공유

■ 이제 남은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뿐.

-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 개최를 개최하여(10월 22일)
 - 실시유형별·국별 실시인원 선발방법 및 기준, 복무 등을 확정하고
 - 필요한 사항은 제정될 가칭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훈령)”에 포함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교육 실시('04년 12월)
- 재택심사시스템 개통 및 테스트('05년 1월~2월)
- 재택심사 시범사업 개시('05년 3월)

■ 도랑치고 가재잡고! – 공간부족 해소하고, 예산도 절감, 더불어 생산성 향상까지

- 사무공간 공유제도를 실시하여 사무실 임차료 절감
 - 시범사업으로 337㎡(102평)의 사무공간 절감(약1억 여원)
 - 본격시행시 연간 1,748㎡(576평)의 사무공간 절감(약6억원)

	시범사업('05)	본격실시('06)	본격실시('07)
실시인원('05)	60	240	240
공간절감(명)	24	144	144

- 업무집중도를 증진하여 심사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
- 다양한 근무환경 선택기회를 제공하여 우수 심사인력 유치·유지

■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 쇠도하는 벤치마킹

- 특허청이 도입하는 재택근무제도가 정부부처 최초의 정규근무시간 중의 재택근무이다 보니
 - 수차례 언론기관의 취재 요청이 있었으며, 이미 지면으로 보도



특허청 재택근무 추진 (서울신문, '04.8.3.)

특허청이 공무원들도 집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 도입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허청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내년 시범실시에 이어 오는 2006년부터...

특허청 재택심사제 도입 (전자신문, '04.8.3.)

... 이 제도는 특허청이 1년여 전부터 사무공간 부족을 정보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업무형태 다양화, 생산성 제고, 우수인재 유치 등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 경남도청, 목포시청 등 여러 국내기관으로부터 문의전화 쇄도
- 전세계 특허청 중 최초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이다 보니
 - 일본 특허청, WIPO 등 해외 특허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 미국 및 호주 특허청의 재택근무는 서류를 출력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형태이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는 아님

제 1 기('03 ~ '05.1) : 준비기

[행정생산성 향상]

3. 특허망 · 행정망 통합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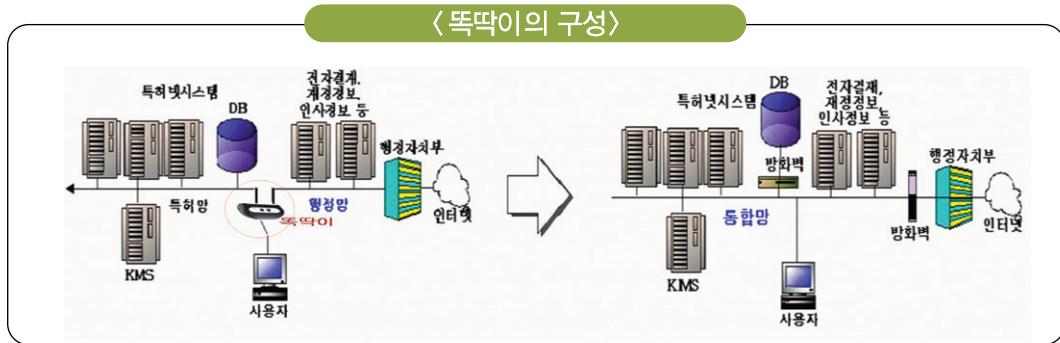
- 되짚어 보기
- 발전시키기
- 새롭게 전환
- 여운(餘韻)을 통한 또 다른 혁신



되짚어 보기

■ “똑딱이”의 탄생 배경

- '99년 1월 특허넷시스템의 개통과 함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행정망)과 특허넷시스템 이용(특허망)을 2개의 물리적 선으로 분리하고, 직원들이 “똑딱이”를 이용하여 직접 망을 선택하도록 함



■ “똑딱이”의 불편함

- “똑딱이”는 철통같은 보안으로 내부 특허넷 시스템을 보호해 주기는 하나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똑딱이를 눌러대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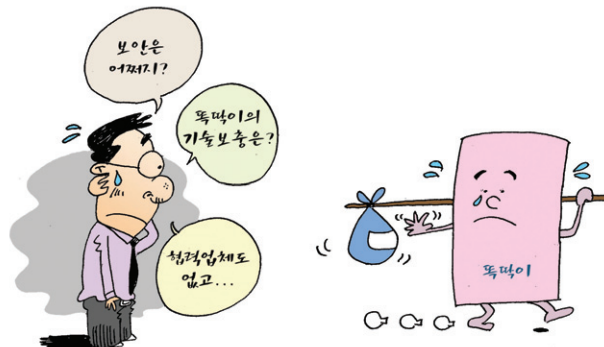
빌진 시키기

■ “똑딱이”를 없애면 정말로 무엇이 좋아지나?

- 재택근무환경 조성이 가능
 - 집에서 행정망을 통해 특허넷시스템 접속가능
- 글로벌 지재권 기구와의 시스템 연계 가능
 - PCT 사무처리 전자화 등 WIPO와의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의 온라인 교환 확대 가능
- 전자정부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DB 연동으로 업무 효율화 추진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으로 인한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 경감

- 정부기관 민원처리 종합 포털 (G4C)과의 연계 및 전자조달 시스템(G2C)과의 연동

- 지재권관련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가능
 - 연구소, 대기업 특허관련 부서, 학교기관 등 연계가능
- 민간기관과의 연계 가속화
 - 수수료 전자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연계, 공인전자인증 지원을 위한 공인인증기관과의 인증정보 교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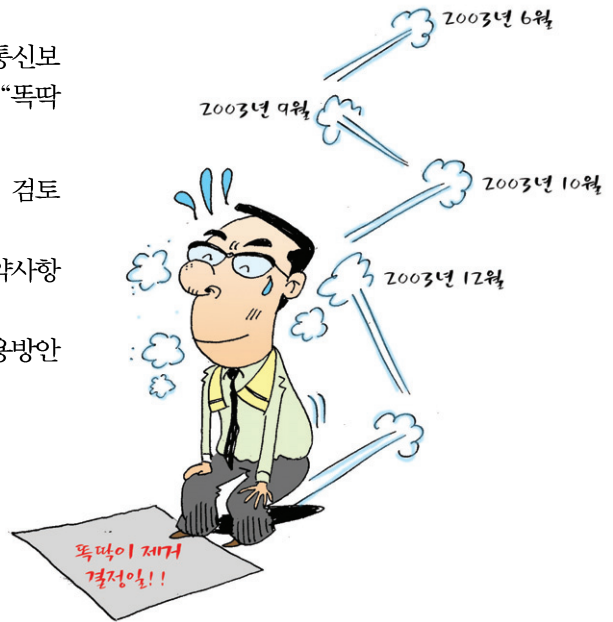
■ 알면서 왜 못 없었나?

- “똑딱이”가 없어짐에 따른 막연한 외부 보안 위협에 대한 부담이 존재
 - 보안침해사고의 대량화·지능화에 따른 두려움 존재
- 단지 기술적인 보안체계 고도화에만 열중하여 균형감각 상실
 - 기술적 보안체계에만 의존함으로써 관리적인 보안체계등이 간과되어 통합적인 보안 체계 강화를 이루지 못했음
 - 이로 인해 “똑딱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착
- 보안위협 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정량화 미흡
 - “똑딱이”를 없애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의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이끌어 내지 못했음

새롭게 진원

■ “뚝딱이” 제거의 결정

- 2003. 06. 13 : 정보관리과 주관의 정보통신보안체계 수립방안 보고회를 통하여 망통합(“뚝딱이” 제거)의 필요성 제기
- 2003. 06. 18~30 : 특허넷Ⅱ TFT 1,2,3차 검토회의 수행
 - 현재의 망연계 구조상의 문제점 및 제약사항 논의
 - 정보보호기술에 대한 현황조사 및 적용방안 논의
- 2003. 06. 25~26 : 관세청 · 조달청 직접 방문 및 기타 공공기관의 망구축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수행
- 2003. 06. 25~26 : 2003. 09 : 특허청 정보보호체계 개선계획 수립
 - 기술적(9개)·물리적(6개)·관리적(8개) 보안체계 개선점을 도출하여 3개년 이행계획 수립
 - 보안체계 체질 개선을 통한 망 통합 기반 환경마련
- 2003. 10~12 : 외부 보안컨설팅을 통한 향후 기본틀 확정
- 2003. 12 : 「2004년도 특허넷Ⅱ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망 통합 확정



■ 실질적 작업 착수

- 2004. 3 : 특허망·행정망 통합관련 행사부 업무협의
 - GVPN을 활용한 재택심사 구현방안, 보안관제서비스 이용방안, 정부고속망 활용방안 논의
 - ⇒ 정부고속망 활용협의로 '04. 7월부터 향후 월 670만원 예산절감 발생 (망통합(“뚝딱이제거”)과 별개로 진행)
- 2004. 8 : 망(네트워크) 논리적·물리적 구성 설계
 - 네트워크 장비, 케이블, 랙 소요 수량 산정
- 2004. 9 :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작업 스케줄 작성 및 사전 작업 수행
 - 망 통합일(“뚝딱이” 제거일) : 2004. 9. 19(일) 09:00

■ 위기발생 및 극복

- 2004. 9. 16 : 특허전산센터 전원다운 발생
 - 망 통합일을 3일 앞둔 16일 특허전산센터의 전원의 다운으로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됨

- 2004. 9. 19~10. 1 : 전원다운 원인규명 및 장비 테스트실시 - 전산실 헬쓰(Health) 체크의 기회로 삼음
- 2004. 10. 3 : 망 통합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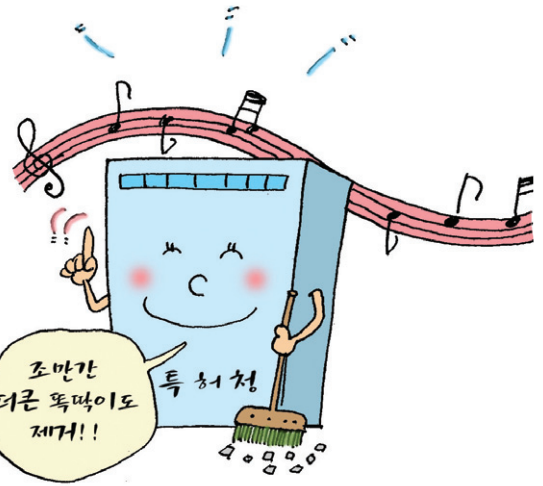
여운을 통한 또 다른 혁신

■ 여운(餘韻)이 있는가?

- 향후 정보통신 자원의 중복 투자비용 절감 및 관리업무 경감
 - 심사관 20명 증원 기준 : 장비증설비용 300만원 절감
 - 네트워크 장비 설치 및 유지업무 반감
- 청내 직원의 편의성 제공
 - 사무실 환경 개선 : 네트워크장비 소음(100dB → 50dB) 및 케이블 (2개 → 1개) 감소
 - 사용자의 네트워크 속도 향상 (10Mbps → 100Mbps)
 - 심사참증자료 검색과 심사처리업무 수행의 연속성 제공
 - ※ 특허망 ⇄ 행정망 망전환 불편 해소 (매번 5~7초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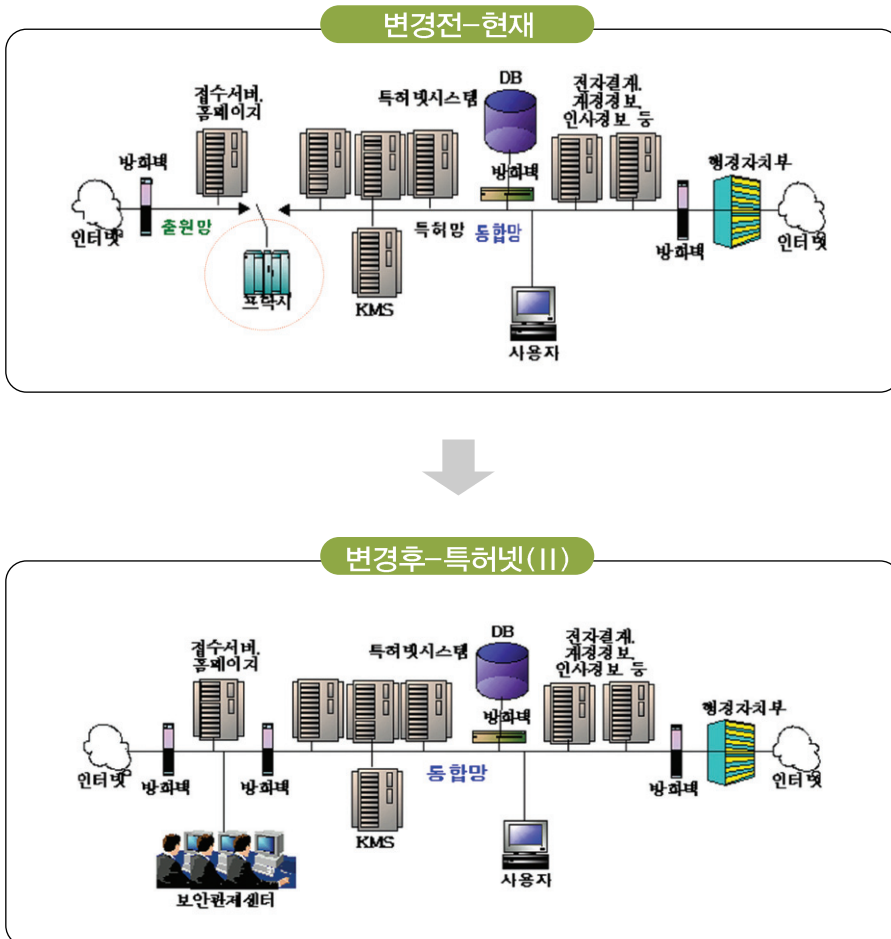


- 확장성 및 유연성 증대
 - 2005년 특허넷Ⅱ 24×365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에 대비('05. 1)
 - 내부사무처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인증 가능('04. 11)
 - 심사관 증원에 따른 재택근무환경 조성
 - 글로벌화된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의 온라인교환가능
 - 민원인서류 제출부담 경감 및 G4C, G2C 연계 가능
 - 지재권 관련 유관기관과 확대된 상호 협력체계 가능



■ 무엇을 또 할 것인가?

- 대전본청과 서울사무소간 속도개선(2004. 12)
 - 10M → 1G의 속도개선으로 업무효율 향상도모
- 출원망·특허망의 연계(통합) 추진(2005. 2)
 - 24시간 365일 무중단 민원서비스 및 실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더 큰 “똑딱이” (프락시서버)제거



제 1 기('03 ~ '05.1) : 준비기

[행정생산성 향상]

4. 세계가 주목하는 PCT 전자출원시스템

- PCT 전자출원시스템, 차질 없이 개발 중인데
- 어! 수수료 감면 제도가 바뀌네!
- 감면 제도를 1년 유예할 수는 없을까?
- 시스템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 전자출원 서비스 조기 시행 방안을 찾아라!
- 한글은 안돼! 국제특허출원은 영어로만?
- 민원인을 위해 만든 제도, 몰라서 사용 못한다면
- 세계가 우리 전자출원시스템을 주목한다.
-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



PCT 온라인시스템, 차질 없이 개발 중이다...

- '02년, 특허넷Ⅱ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행하여
 - 국제특허출원 민원서류의 온라인 제출 지원, 페이퍼리스 사무처리 환경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PCT온라인 시스템을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03년부터 '04년까지 2개년간 개발한 후 2005년부터 서비스 개시하기로 결정
- '03년 4월, PCT온라인시스템 개발 사업은 시작되고,
 - 전자출원시스템 구축방향 등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WIPO로부터 한통의 소식이 날아든다

이! 수수료 감면 제도가 바뀌네!

- '03년 9월 개최된 PCT 총회 의제로 수수료 개정안이 상정
 - WIPO는 '04년 1월부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전자출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자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감면



※ 수수료 감면액 개정안
('03. 8. 7)

	종 전	개 정 안
서면+FD 부분(기존 방식)	190,000원	95,000원
전자출원(신규 방식)	-	285,000원

- 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05년부터 PCT 전자출원이 가능한 국내출원인들은
 - '04년, 1년간은 전자출원에 따른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 설상가상, 국내출원인들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많이 이용(약90%)하던 기존 방식의 수수료 감면액이 축소되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

감면 제도를 1년 유예할 수는 없을지?

- 가. 개정안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 WIPO의 수수료 변경안이
 - 너무 급하게 제안(시행 4개월 전)된 점,
 - 기존 감면되던 금액을 축소는 가혹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

나. WIPO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감면 제도의 1년 유예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 전자출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감면제도의 변경은 꼭 필요
- PCT 전자출원 시행과 수수료 변경안 자체에 무관심 (전산화 미비한 대부분의 특허청)의 이유로



- 수수료 감면 제도의 유예 노력은 결국 실패!

시스템 개발 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 수수료 개정안을 이유로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정보기획국내에서는 열띤 토론이 진행 됨



〈 타성에 젖은 정보기획국 C모 사무관 〉

- 1년 앞당겨봐야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계획을 수정해!
- 고생해서 전자출원 시행 시기 앞당겨봐야 민원 인들이 알아주기나 한대!

〈 혁신적 접근 방식의 정보기획국 C모 서기관 〉

-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 고민하면 기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없으면서 전자출원 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타날 것이다



-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토론과 설득을 통해 민원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결정!!



전자출원 서비스 조기 시행 방안을 찾아라!

- 특허넷Ⅱ TFT에서는 시행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 ('03. 9. 8)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 정보기획국 K 사무관〉

- 전자출원이라고 해서 꼭 온라인 출원부터 시작해야 하나,
- 우선 동일한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전자매체(CD-R)출원서비스를 개시하고, 1년 후에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 CD-R 전자출원시스템을 선구축 시스템으로 결정

〈개발 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 정보기획국 C 사무관〉

- WIPO에서는 '04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전자출원S/W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청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면
- 오픈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출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 전자출원 S/W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 추진
(WIPO에 파견중인 L 사무관과 협업하여 추진키로 결정)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함, 정보기획국 N 사무관〉

- 법개정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데 1월에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검토결과,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근진 조문 신설 등 특허법 시행규칙 및 수수료징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



- 관련 법령이 1월 시행 목표로 수정 중임을 확인, 개정안 마련('03.9.26)하여 개정 절차에 반영

※ 구축 방향 결정, '03.9.30 청장님 보고

- 기존의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전자매체를 이용한 출원 부분 선구축, '04.1월 오픈 추진

한 글은 인돼! 국제특허출원은 영어로만?

가. WIPO와 공동개발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 개발에 착수

- 우리청에서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WIPO는 요구사항을 S/W에 반영하면
- 우리청에서 S/W를 받아 테스트를 진행한 후 결과 피드백

나. 시차와 언어의 장벽을 뚫고 공동 개발을 진행하던 중 중요한 문제점 발견!

WIPO의 S/W로는 한글명세서를 작성이 안된다.

- WIPO의 전자출원S/W가 영어 기반으로 설계되어 한글명세서 양식이 제공되지 않으며, 한글 입력시 오류 발생!
- WIPO에 한글 양식과 한글 폰트를 제공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계속적으로 문제 발생, 오픈 날짜는 다가오고

국제특허출원 중 약 60%가 한글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한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시스템 오픈 불가(반쪽 시스템)

다. 관련 자료 짚어지고 WIPO로 ('03.10.24)

- 출발시 K 팀장님 인사말 : 해결될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 양 기관의 기술자가 머리를 맞대고 몇 일을 고생할 결과 출장 마지막 날 드디어 해결 방안 도출 성공 (심봤다!)

☞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시스템 구축은 다시 정상궤도로



민원인을 위해 만든 제도, 물리시 시용 못한다면?

※ 단기간에 완성한 시스템이라 홍보·교육이 절실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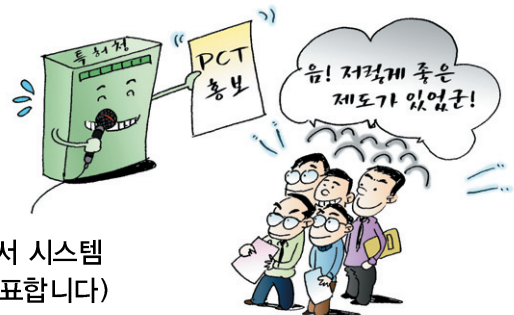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하자!
('03. 12. 1, 간부회의, 청장님 말씀)

○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홍보, 교육 계획 수립(12. 4.)

- 국제출원제도 설명회를 활용하여 전국 순회 교육 실시
- 발명 진흥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차례 민원인 교육
-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6만여명)에게 안내메일발송
- 홈페이지에 'PCT 전자출원' 코너 신설 매뉴얼, 교육자료 게재

우여곡절 끝에 '04년 1월 2일 무사히 시스템 오픈(1.7. 보도자료)

(4개월간, 휴일에 상관없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시스템 개발에 수고한 LG CNS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세계가 우리 전자출원시스템을 주목한다.

가. PCT 전자출원율, 세계 1위

- WIPO에서 각국에 배포한 '04년 PCT 총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청의 '04년 상반기 PCT 전자출원율이 당당히 1위
 - KIPO : 40%, EPO : 13%, JPO : 10%, USPTO : 전자출원 미시행
 - '04년 9월까지 총 1,315건(52%)이 전자출원제도로 출원, 357백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 발생
 - 전자출원 S/W를 한·WIPO 공동개발하여 약 80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발생



나. 세계가 우리의 PCT 전자출원시스템을 주목한다.

- WIPO에서는 우리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국에 보급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인정
 - 우리청 시스템을 기본으로 보급용 접수시스템을 우리청에서 개발한 후 한·WIPO 공동으로 세계 각국에 배포 구축
 - '04년 PCT 총회에서 KIPO의 PCT-ROAD¹⁾ 시스템 설명자료 배포
- 1) PCT-ROAD :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 전세계 배포를 목표로 KIPO에서 개발하는 전자출원시스템 명칭

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

- 기존의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 담당자에서 관리자까지 조직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성공을 보장한다.

